

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

<목 차>

1.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기상청	작 성 자	이름	김지수
	담당부서 (과)	교육기획과		직급	행정주사
	원장 직무대리	임덕빈		연락처	02-2181-0034
	과장	임덕빈		이메일	wooao007@mail. go.kr

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

임덕빈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		
	2.규제조문	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전문		
	3.위임법령	기상법 제35조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18. 5. 24.~6. 14.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○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정(2018.4.18.공포, 2018.4.19.시행)에 따라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		
	7.규제내용	○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분야별 교육과정, 교육주기, 교육대상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피규제집단: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○ 이해관계자: 위 기관에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		
	9.규제목표	○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제고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	11.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○ 비용 - '18년도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 예산(425백만원) - 교육훈련비는 무료, 교육훈련여비는 각 기관에서 부담 ○ 편익 -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종사자 대상의 방재기상업무 전문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제고		
기타	12.일몰설정 여부	해당없음		
	13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

〈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<신설></p>	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기상법」 제 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(이하 “전문교육”이라 한다)의 세부 교육대상자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전문교육 종류 및 대상자 등) 전문교육 종류와 교육대상자는 별표와 같다.</p> <p>제3조(교육의 신청)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교육경비) 교육훈련비는 무료이며 교육훈련 여비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다.</p> <p>제5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
I.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(배경)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(2018. 4. 18.)에 따라 방재기상업무 전문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 필요
 - ※ 근거: 「기상법 시행규칙」 제15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(목적)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종사자 대상의 방재기상업무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 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제고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전문교육 과정명, 교육 주기, 교육대상, 교육 목표와 함께 교육신청서 표준 양식을 제공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분야별 교육수요자	방재기상교육 분야별(자연재해, 교통, 해양, 산림, 항공) 세부 교육내용 검토 (2017.12.13.~12.22.)	분야별 방재기상 교육 세부내용 반영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	기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(2018. 1. 11. ~ 2018. 2. 20.(40일간)	의견 없음
	관계기관 의견조회 (감사원 등 46개 중앙행정기관) (2018. 1. 8.~2018. 1. 18.)(10일간)	의견 없음

3. 규제목표

○ 기상 및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기상정보는 과거와 같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보를 넘어서 이제 국민의 생명·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정보임.

이에,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국가 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.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종사자 대상의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과정명, 교육시간, 교육 대상, 교육 신청서 등 기본 정보 제공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경쟁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중기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: 해당사항 없음
- 국제 기준 정합성: 국제기준 없음
- 일몰설정 여부: 해당사항 없음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: 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해당사항 없음

○ 타법사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

<p>법 (18.4.17 개정)</p>	<p>시행령 (18.5.8 개정)</p>	<p>시행규칙 (18.1.18 개정)</p>
<p>제29조의2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(이하 "전문교육"이라 한다)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,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37조의2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)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정안전부,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·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. 재난관리책임기관(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) 소속의 교육기관 3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	<p>제6조의2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)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전문교육"이라 한다)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,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자 전문교육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.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부단체장(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) 2. 실무자 전문교육: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<p>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이내로 하고,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,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</p>

Ⅲ. 규제 의 실효성

1. 규제 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본 고시 제정 이전부터 기상업무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방재기상과정을 이수해 왔을 뿐 아니라, 행정안전부가 본 교육과정을 재난안전 분야 교육과정으로도 지정('18.2.)
- 또한, 교육기간이 타 교육훈련에 비해 짧고 수요기관의 의견을 들어 교육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님
- 아울러, 교육대상이 주로 공무원, 공공기관 근무자들로써 범국가적 재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사람들임
- 따라서 공인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안전,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위해 피규제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판단됨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차등화의 실효성이 없음

2. 규제 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은 기존부터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왔던 기상업무 종사자 대상의 방재기상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, 별도의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.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에 홍보 활동이 필요하나, 기상청 세부사업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사업에 기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음.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기상법 개정(2017.4.18.)
- 전문교육 분야별 교육수요자 및 전문가 자문(2017.12.13.~12.22.)
-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(2018.1.11.~ 2.20., 40일간)
- 기상법 시행규칙 관계기관 의견조회(2018.1.8.~ 1.18., 10일간)
- 행정안전부가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재난안전 분야 공공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(2018.2.28.)
-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으로 인정(2018.4.16.)
-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(2018.4.18.) 및 시행(2018.4.19.)

2. 향후 평가계획

- 전문교육 대상기관 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 사항 관리

3. 종합결론

○ 본 고시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분야별 교육과정, 교육시간, 교육대상 및 교육 수강신청 양식에 관한 내용이며,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 운영을 통해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별첨
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			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1 :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 1 : >

① 정부 :